HYOSUNG Harrington Place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회,2회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6.16.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주택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주택기금에서 시행하는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에 따르며 총 2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는 총 2회 중 1, 2회차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회에 걸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각각 받으나 사용검사, 착공, 입주, 분양가, 계약일자, 중도금 납부일자 등의 경우 회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급 주택형, 분양가, 청약일정, 당첨자발표일 등은 회차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공동주택은 총 2,586세대로 1회차 1,234세대(특별공급 382세대 포함), 2회차 1,352세대(특별공급 420세대 포함)로 구성되며 각 회차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회차와 2회차의 당첨자발표일이 상이하므로 회차별로 1인 1건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동일 회차 내에서 1인 2건 청약하는 경우는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순위 청약자의 경우 1회차, 2회차 중복당첨 시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1회차가 우선합니다.) (1회 :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07동, 108동, 112동, 113동 / 2회 : 103동, 106동, 109동, 110동, 111동, 114동, 115동, 116동)

◎ 본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6.16) 주택공급지역을 천안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 신청자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비수도권 1순위 발생요건이 기존 '1년' → '6개월'로 변경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비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비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며,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향후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국민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회] 천안시청 건축과 – 18293호(2017.06.16), [2회] 천안시청 건축과 – 18292호(2017.06.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번지 일원 ■ 대지면적 : 총대지면적 94,932.10㎡(아파트 90,383.80㎡, 근린생활시설 4,548.3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33층, 16개동 총 2,5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1회분 1,234세대[특별공급 382세대 포함], 2회분 1,352세대[특별공급 420세대 포함]
[기관특별공급 24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4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4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1세대 포함]

■ 전체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주차장포함)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소계			
민영주택	51.92A	51A	51.92	22.59	74.51	32.00	106.51	28.3485	23	23	23	6	75	165	240	8
	51.87B	51B	51.87	22.34	74.21	31.97	106.18	28.3212	4	4	4	0	12	39	51	2
	59.86A	59A	59.86	24.97	84.83	36.90	121.73	32.6838	85	85	85	25	280	584	864	30
	59.92B	59B	59.92	25.48	85.40	36.94	122.34	32.7166	34	34	34	10	112	240	352	12
	59.96C	59C	59.96	25.55	85.51	36.96	122.47	32.7384	17	17	17	4	55	123	178	6
	59.92D	59D	59.92	24.64	84.56	36.94	121.50	32.7166	13	13	13	3	42	105	147	5
	71.40A	71A	71.40	24.47	95.87	44.02	139.89	38.9847	22	22	22	6	72	162	234	8
	71.66B	71B	71.66	24.86	96.52	44.17	140.69	39.1266	11	11	11	2	35	82	117	4
	71.42C	71C	71.42	25.05	96.47	44.03	140.50	38.9956	8	8	8	1	25	62	87	3

주택형(㎡)	동별 구분	세대수		층구분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총세대수	층별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1개월내	2017.11.20	2018.03.20	2018.08.20	2019.01.21	2019.06.20	2019.11.20	
59.96C	110동3호 114동3호 115동3호 116동3호	120	4	1층	59,048,797	163,151,203	222,200,000	5,000,000	17,220,000	22,220,000	22,220,000	22,220,000	22,220,000	22,220,000	22,220,000	66,660,000
			4	2층	59,048,797	153,951,203	213,000,000	5,000,000	16,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21,300,000	63,900,000
			4	3층	59,048,797	156,251,203	215,300,000	5,000,000	16,53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64,590,000
			4	4층	59,048,797	158,551,203	217,600,000	5,000,000	16,760,000	21,760,000	21,760,000	21,760,000	21,760,000	21,760,000	21,760,000	65,280,000
			20	5~9층	59,048,797	167,751,203	226,800,000	5,000,000	17,680,000	22,680,000	22,680,000	22,680,000	22,680,000	22,680,000	22,680,000	68,040,000
			40	10~19층	59,048,797	169,951,203	229,000,000	5,000,000	17,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68,700,000
			40	20층이상	59,048,797	172,251,203	231,300,000	5,000,000	18,130,000	23,130,000	23,130,000	23,130,000	23,130,000	23,130,000	23,130,000	69,390,000
			4	최상층	59,048,797	183,751,203	242,800,000	5,000,000	19,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72,840,000
59.92D	103동 4호	29	1	1층	59,009,405	162,190,595	221,200,000	5,000,000	17,120,000	22,120,000	22,120,000	22,120,000	22,120,000	22,120,000	22,120,000	66,360,000
			1	2층	59,009,405	153,090,595	212,100,000	5,000,000	16,210,000	21,210,000	21,210,000	21,210,000	21,210,000	21,210,000	21,210,000	63,630,000
			1	3층	59,009,405	155,390,595	214,400,000	5,000,000	16,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64,320,000
			1	4층	59,009,405	157,590,595	216,600,000	5,000,000	16,660,000	21,660,000	21,660,000	21,660,000	21,660,000	21,660,000	21,660,000	64,980,000
			5	5~9층	59,009,405	166,790,595	225,800,000	5,000,000	17,580,000	22,580,000	22,580,000	22,580,000	22,580,000	22,580,000	22,580,000	67,740,000
			10	10~19층	59,009,405	168,990,595	228,000,000	5,000,000	17,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22,800,000	68,400,000
			9	20층이상	59,009,405	171,290,595	230,300,000	5,000,000	18,030,000	23,030,000	23,030,000	23,030,000	23,030,000	23,030,000	23,030,000	69,090,000
			1	최상층	59,009,405	182,690,595	241,700,000	5,000,000	19,170,000	24,170,000	24,170,000	24,170,000	24,170,000	24,170,000	24,170,000	72,510,000
71.40A	106동2,3호 111동2,3,5호	138	2	1층	70,314,945	187,785,055	258,100,000	5,000,000	20,810,000	25,810,000	25,810,000	25,810,000	25,810,000	25,810,000	25,810,000	77,430,000
			4	2층	70,314,945	177,085,055	247,400,000	5,000,000	19,740,000	24,740,000	24,740,000	24,740,000	24,740,000	24,740,000	24,740,000	74,220,000
			5	3층	70,314,945	179,785,055	250,100,000	5,000,000	20,010,000	25,010,000	25,010,000	25,010,000	25,010,000	25,010,000	25,010,000	75,030,000
			5	4층	70,314,945	182,385,055	252,700,000	5,000,000	20,270,000	25,270,000	25,270,000	25,270,000	25,270,000	25,270,000	25,270,000	75,810,000
			25	5~9층	70,314,945	193,085,055	263,400,000	5,000,000	21,340,000	26,340,000	26,340,000	26,340,000	26,340,000	26,340,000	26,340,000	79,020,000
			50	10~19층	70,314,945	195,685,055	266,000,000	5,000,000	21,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79,800,000
			42	20층이상	70,314,945	198,385,055	268,700,000	5,000,000	21,87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80,610,000
			5	최상층	70,314,945	211,685,055	282,000,000	5,000,000	23,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84,600,000
71.66B	106동1호 111동1,6호	86	2	1층	70,570,994	182,629,006	253,200,000	5,000,000	20,32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75,960,000
			3	2층	70,570,994	172,229,006	242,800,000	5,000,000	19,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72,840,000
			3	3층	70,570,994	174,829,006	245,400,000	5,000,000	19,540,000	24,540,000	24,540,000	24,540,000	24,540,000	24,540,000	24,540,000	73,620,000
			3	4층	70,570,994	177,429,006	248,000,000	5,000,000	19,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74,400,000
			15	5~9층	70,570,994	187,829,006	258,400,000	5,000,000	20,840,000	25,840,000	25,840,000	25,840,000	25,840,000	25,840,000	25,840,000	77,520,000
			30	10~19층	70,570,994	190,429,006	261,000,000	5,000,000	21,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78,300,000
			27	20층이상	70,570,994	193,129,006	263,700,000	5,000,000	21,370,000	26,370,000	26,370,000	26,370,000	26,370,000	26,370,000	26,370,000	79,110,000
			3	최상층	70,570,994	206,129,006	276,700,000	5,000,000	22,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83,010,000
71.42C	106동4호 111동4호	54	1	1층	70,334,641	186,765,359	257,100,000	5,000,000	20,710,000	25,710,000	25,710,000	25,710,000	25,710,000	25,710,000	25,710,000	77,130,000
			2	2층	70,334,641	176,165,359	246,500,000	5,000,000	19,65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24,650,000	73,950,000
			2	3층	70,334,641	178,765,359	249,100,000	5,000,000	19,910,000	24,910,000	24,910,000	24,910,000	24,910,000	24,910,000	24,910,000	74,730,000
			2	4층	70,334,641	181,465,359	251,800,000	5,000,000	20,180,000	25,180,000	25,180,000	25,180,000	25,180,000	25,180,000	25,180,000	75,540,000
			10	5~9층	70,334,641	192,065,359	262,400,000	5,000,000	21,240,000	26,240,000	26,240,000	26,240,000	26,240,000	26,240,000	26,240,000	78,720,000
			20	10~19층	70,334,641	194,665,359	265,000,000	5,000,000	21,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79,500,000
			15	20층이상	70,334,641	197,365,359	267,700,000	5,000,000	21,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80,310,000
			2	최상층	70,334,641	210,565,359	280,900,000	5,000,000	23,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28,090,000	84,270,000
84.93A	109동 1,3,4호	95	1	1층	83,639,331	193,960,669	277,600,000	5,000,000	22,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27,760,000	83,280,000
			1	2층	83,639,331	200,060,669	283,700,000	5,000,000	23,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85,110,000
			3	3층	83,639,331	203,060,669	286,700,000	5,000,000	23,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86,010,000
			3	4층	83,639,331	206,160,669	289,800,000	5,000,000	23,980,000	28,980,000	28,980,000	28,980,000	28,980,000	28,980,000	28,980,000	86,940,000
			15	5~9층	83,639,331	218,360,669	302,000,000	5,000,000	25,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90,600,000
			30	10~19층	83,639,331	221,360,669	305,000,000	5,000,000	25,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91,500,000
			39	20층이상	83,639,331	224,460,669	308,100,000	5,000,000	25,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92,430,000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항목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을 위함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점 만점 기준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①무주택 적용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5)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유의 사항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입주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반드시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의 제조사와 사양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선택내용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와 설치되는 품목 또는 내용(가구 형태 및 디자인 포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의 판매가(부가세 포함)는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에어컨 냉매배관/배선, 기본제공 가구 등)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사시 가전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가구, 도어, 시스템선반 등)은 제작회사 및 설치회사,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항목별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은 해당 타입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옵션 선택시 선택하지 않은 세대와 제공되는 공간 및 품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에어컨 냉매배관만 시공됨.(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드레인 포함)은 설치하지 아니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음.
•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도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없음. • 타입에 따라 침실이 아닌 알파룸 또는 팬트리의 경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므로 해당 없음.

Ⅶ 기 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제4절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함.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 본 내용은 본 계약 여타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갑", 시행위탁사 "병", 시공사 "정"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음을 "을"은 인지하고 다음 각 항의 내용을 확인한다.
(1) 본 계약 공급목적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병"이 "갑"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병"임을 "을"은 인지한다.
(2)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관련 법률 및 본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병"이 부담한다.
(3) "병"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을"은 이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을"에게 위 공급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갑"이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병"(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수탁사	위탁사	시공사	
상 호	(주)생보부동산신탁	이노빌드 주식회사	(주)효성	진흥기업(주)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161511–0077391	110111–0030497	110111–0006349

▣ 분양홈페이지 : http://2586megacity.co.kr/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31번지 ▣ 분양문의 : ☎ 041–555–2586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분양문의 041) 555-2586

총 2,586세대 [51~84㎡]